**「투자자예탁금 이용료 지급 기준」 신구조문대비표 (2022.07.01 개정)**

□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」 제3-7조 제1항에 의거하여 개정(안)을 마련함.

| **현 행** | **개 정 (안)** | **비 고** |
| --- | --- | --- |
| **제5조【이용료 산정 및 지급방법】** ① 투자자예탁금 이용료 산정은 지급대상 투자자예탁금의 일평균 잔고를 기준으로 산정한다**.** | **제5조【이용료 산정 및 지급방법】** ① 투자자예탁금 이용료 산정은 지급대상 투자자예탁금의 일평균 잔고를 기준으로 산정한다**.**  ②회사는 투자자예탁금으로부터 발생하는 운용수익과 투자자예탁금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직.간접 제반비용을 감안하여 투자자예탁금 이용료를 산정하여야 한다   1. 예금자 보험료 2. 감독분담금 3. 지급결제 관련 비용 4. 인건비 5. 전산비 6. 그 밖에 회사가 투자자예탁금 관련 비용으로 합리적인 방법에 따라 산정한 비용 | ② 투자자예탁금 이용료 산정기준 추가 |
| **<신 설>** | **부 칙**  제1조(시행) 제5조는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**.** | **부칙 신설** |